

1. 개정이유

프로젝트 투자 대상 확대 및 개인투자조합의 결성요건 완화 등 투자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벤처투자회사 간 영업양도, M&A 시 종전 회사의 행정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(안 제23조의2제1항·제2항)
- 나. 지역 모펀드를 통해 지방정부가 개인투자조합에 20% 이상 간접 출자한 경우에도 법인의 출자 허용 비율을 30→49% 상향 적용(안 제5조 제1항)
- 다. 프로젝트 투자 대상 확대(안 제2조제2항)
- 라. 일반법인의 공동운용사(Co-GP) 자격 제한적 허용(안 제24조제5항)
- 마. 모태자펀드의 투자 의무 위반 시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한 수준의 행정 처분 적용(안 별표4)
- 바. 이해관계인에 대한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에 따른 행정 처분 세부기준 인용 조문 현행화(안 별표1·2·3·4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창업자, 벤처기업 또는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

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”을 “중소기업”으로, “7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프로젝트 투자로 인정한다”를 “60퍼센트 이상이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프로젝트 투자로 인정한다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7호가목 중 “이상 출자하는”을 “이상 출자(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출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출자하는”을 “출자(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출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”으로 한다.

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7조제4호나목”을 “제17조제3호나목”으로 한다.

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2(행정처분 등 확인요청) ①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벤처투자회사의 지위를 승계받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행정처분의 절차

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벤처투자회사 행정처분 확인 요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통해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행한 위법행위가 있는지,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벤처투자회사 행정처분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.

제24조제5항 중 “각각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2항·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2항·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
 2.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가.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일 것
- 나. 영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회사가 아닐 것
- 다. 금융 및 보험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회사가 아닐 것. 다만,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업종(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

타 여신금융업은 제외한다)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회사는 제외한다.

라. 영 제33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

마. 부채비율이 200퍼센트를 넘지 않을 것

별표 1 제2호가목에 거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거) 법 제14조제2항제4의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경고 또는 시정명령	시정명령, 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	등록취소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	------

별표 1 제2호나목에 거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거) 법 제14조제2항제4의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경고 또는 시정명령	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 명령 3개월	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 명령 6개월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별표 1 제2호다목에 거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거) 법 제14조제2항제4의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경고 또는 직무정지 1개월 요구	직무정지 3개월 요구	직무정지 6개월, 면직 또는 해임 요구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별표 2 제2호에 2의2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)의2 법 제27조제1항제2의2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	경고 또는 시정명령	시정명령, 업무정지	등록취소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

			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	
--	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별표 3 제2호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)의2 법 제39조제1항제2의2 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		경고 또는 시정명령	시정명령, 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	등록취소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	--	------

별표 4 제2호가목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)의2 법 제70조제6항에 따라 투자비율을 달리 정하는 벤처 투자조합이 해당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	법 제62조제1항 제4호	경고 또는 시정명령	시정명령, 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	등록취소
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	------

별표 4 제2호가목에 거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거) 법 제52조제2항제4의2호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 우		경고 또는 시정명령	시정명령, 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	등록취소
--	--	---------------	--	------

별표 4 제2호나목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)의2 법 제70조제6항에 따라 투자비율을 달리 정하는 벤처 투자조합이 해당 투자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	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 항제4호	경고 또는 시정명령	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 명령 3 개월	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 명령 6 개월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별표 4 제2호나목에 거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거) 법 제52조제2항제4의2호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 우		경고 또는 시정명령	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 명령 3 개월	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 명령 6 개월
--	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별표 4 제2호다목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)의2 법 제70조제6항에 따라 투자비율을 달리 정하는 벤처 투자조합이 해당 투자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	법 제6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1 항제4호	경고 요구	직무정지 1개월 요구	직무정지 3개월 요구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

별표 4 제2호다목에 거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거) 법 제52조제2항제4의2호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 우		경고 또는 직무정지 1개월 요구	직무정지 3개월 요구	직무정지 6개월, 면직 또는 해임 요구
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벤처투자회사 행정처분 확인 요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
		60일
요청인	상호 및 명칭	대표자 성명
	설립 연월일	법인등록번호
	주소 (전화번호)	
양도인 또는 종전의 벤처투자회사	상호 및 명칭	대표자 성명
	설립 연월일	법인등록번호
	주소 (전화번호)	
	위 요청인이 벤처투자회사의 지위를 승계 받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임을 확인합니다. 확인자 (서명 또는 인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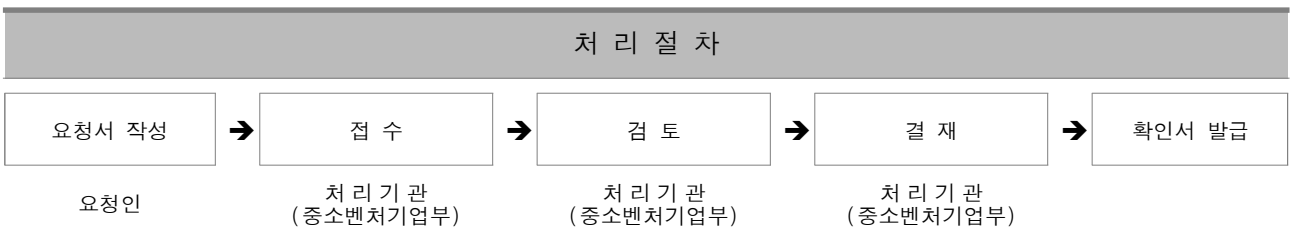
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위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 확인된 위법행위가 있는지,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요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



벤처투자회사 행정처분 확인서

벤처투자회사 개요	상호 및 명칭	대표자 성명
	설립 연월일	법인등록번호
	주소 (전화번호)	
확인된 위법행위가 있는지,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		
처분(적발) 날짜	처분(적발)내용	처분(적발)사유
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위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있는지,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인		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
에서 “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
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~ 6. (생략)

7. 「법인세법」 제2조제1호부
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
법인으로서 창업기획자가 업
무집행조합원이 되는 개인투
자조합에 출자하는 법인. 다
만, 개인투자조합 결성액 대비
법인의 총 출자금액은 다음
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
초과할 수 없다.

가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
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
(이하 “수도권”이라 한다)
외의 지방자치단체, 「지
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
공기업 또는 「지방자치단
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
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
출자·출연 기관(이하 “지
방자치단체등”이라 한다)
이 개인투자조합(출자금액
의 50퍼센트 이상을 수도
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-----

-----.
-----.

가. -----

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하는 개인투자조합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에 20퍼센트 이상 출자하는 경우: 49퍼센트

나. 수도권 외의 지방자치단체등이 개인투자조합에 20퍼센트 미만 출자하는 경우: 40퍼센트

다. (생략)

8. ~ 10. (생략)

② ~ ⑦ (생략)

제15조(창업기획자의 행위 제한)
영 제16조제4호 및 제17조제4호
나목 본문에서 “중소벤처기업
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”란
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---- 이상 출자(민간재간
접벤처투자조합 또는 벤처
투자조합을 통해 출자하는
경우를 포함한다) 하는 --
--

나. -----

----- 출자(민간재간
접벤처투자조합 또는 벤처
투자조합을 통해 출자하는
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---

다. (현행과 같음)

8. ~ 10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창업기획자의 행위 제한)
----- 제17조제3호
나목 -----

-----.

1. ~ 4. (생략)

< 신 설 >

제24조(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) ① ~ ④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23조의2(행정처분 등 확인요청)

①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벤처투자회사의 지위를 승계받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법 제49조의2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벤처투자회사 행정처분 확인 요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통해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행한 위법행위가 있는지,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벤처투자회사 행정처분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.

제24조(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) ① ~ ④

(생략)

⑤ 법 제50조제3항 후단 또는 제63조의2제3항에서 “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각각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2항·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.

<신설>

<신설>

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----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-----

-----.

1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2항·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
2.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로서
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
가.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일 것
나. 영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회사가 아닐 것
다. 금융 및 보험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회사가 아닐 것. 다만, 중소기업부

⑥ (생 략)	<u>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</u> <u>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</u> <u>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업</u> <u>종(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</u> <u>른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</u> <u>은 제외한다)을 주된 업종</u> <u>으로 하는 회사는 제외한</u> <u>다.</u> <u>라. 영 제33조 제2호 각 목의</u> <u>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</u> <u>문인력을 갖추 것</u> <u>마. 부채비율이 200퍼센트를</u> <u>넘지 않을 것</u> ⑥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	---